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435호 2015. 8. 4. (화요일)

선람	기 관 의 장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15-51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95차) ····· 2
○ 하동군 고시 제2015-52호 지적기준점성과 고시 ····· 5
○ 하동군 고시 제2015-53호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고시 ····· 7

공 고

○ 하동군 공고 제2015-669호 하동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4
○ 하동군 공고 제2015-673호 2013.1.1. 기준 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공시 ····· 19
○ 하동군 공고 제2015-674호 하동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
○ 하동군 공고 제2015-675호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정 공고 ····· 24
○ 하동군 공고 제2015-678호 하동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25
○ 하동군 공고 제2015-681호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1
○ 하동군 공고 제2015-682호 하동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6

회람									

발행 : 하동군 편집 : 기획감사실 (055)880-2041, 행정2041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435호 2015. 8. 4. (화요일)

선람	기 관 의 장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15-51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95차) ····· 2
○ 하동군 고시 제2015-52호 지적기준점성과 고시 ····· 5
○ 하동군 고시 제2015-53호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고시 ····· 7

공 고

○ 하동군 공고 제2015-669호 하동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4
○ 하동군 공고 제2015-673호 2013.1.1. 기준 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공시 ····· 19
○ 하동군 공고 제2015-674호 하동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
○ 하동군 공고 제2015-675호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정 공고 ····· 24
○ 하동군 공고 제2015-678호 하동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25
○ 하동군 공고 제2015-681호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1
○ 하동군 공고 제2015-682호 하동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6

회람									

발행 : 하동군 편집 : 기획감사실 (055)880-2041, 행정2041

하동군 고시 제2015-51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95차)

우리군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7. 24.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입석길 90-118 외 2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24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12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7. 10.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입석리 339-4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입석길 90-118	20150724	20070618	선돌이 있어 입석이 되어 버린 법정리명을 도로명에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삼신리 141-2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삼신길 14-16	20150724	20070618	마을의 북쪽에는 지리산이 있고 서쪽에는 봉래봉이 있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위태리 1367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돌고지로 1342-22	20150724	20070618	횡천과 옥종의 경계지점에 있는 재로서 재를 넘을때 산모퉁이를 돌고 돌아 넘는다고해서 돌고지재라고한 옛지명 사용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학리 903-1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구학길 53	20150724	20070618	오래된 학이 사는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구학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고룡리 540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남양안길 12	20150724	20070618	남양이라는 자연마을명에 지역특성을 합성하여 남양안길로 명명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화정리 산 288-3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상촌1길 53	20150724	20070618	북천면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명에 일련번호방식의 첫번째 도로명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정서리 354-2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악양서로 307-16	20150724	20070618	도로시점이악양중심으로부터서쪽에위치하는 방향성 부여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산 74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맥전길 55-1	20150724	20070618	맥전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912-2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영당2길 29-5	20150724	20070618	금천사를 세워 쌍계사에 모셧던 고운선생의 영정을 옮겨오면서 붙여진 자연마을명에 일련번호 방식의 두번째 도로명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운암리 106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진암길 59-6	20150724	20080402	진암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청룡리 275-8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은행나무길 27	20150724	20080402	큰은행나무로 가는길로 은행나무길로 명명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873-7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선소길 58-1	20150724	20080402	하동을 지키는 관방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하 동 군 공 보

(4) 제 435 호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873-8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선소길 58	20150724	20080402	하동을 지키는 관방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두양리 305-2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숲촌길 8-12	20150724	20080402	숲이 많이 있던 곳에 마을이 형성되어 숲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감당리 산 267-5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우성길 233-7	20150724	20080402	우성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북방리 843-1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불무길 106	20150724	20090302	불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궁항리 1101-21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금성중앙길 25	20150724	20090302	금성면의 중앙을 통과하는 도로로 금성중앙길로 명명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1172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서재길 81-8	20150724	20090302	서당이 있었다 하여 붙여진 서재골 지역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정금리 산 92-4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신촌도심길 65-1	20150724	20090302	골짜기의 옛지명에서 유래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 388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고운동길 23-6	20150724	20090702	고운동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 산 162-6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고운동길 25-1	20150724	20090702	고운동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신월리 957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사막1길 21	20150724	20111025	사평 사드래와 양막골의 마을을 합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에 일련번호방식의 첫번째 도로명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고서길 71-6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고서길 71-2	20150724	20140701	자연마을명으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고서길 71-6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고서길 71-6	20140701	20140701	자연마을명으로 도로명 부여	

하동군 고시 제2015-52호

지적기준점성과 고시

지적기준점성과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일

하 동 군 수

기준점 명칭	기준점 번호	토지소재	지적위성좌표/지적좌표			원점	평면좌표		설치일자	표지 재질	측량성과 보관장소	비고
			위 도	경 도	표 고		X	Y				
도근점	5001	양보면 감당리 산37	35-05-07.4507	127-48-53.6899	221.086	중 부	276873.392	274315.477	2015.6.4.	철제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35-04-56.3407	127-48-51.0250	193.352		176565.160	274241.480				지역
도근점	5002	양보면 감당리 산37	35-05-00.1259	127-48-53.2884	252.040	중 부	276647.571	274307.150	2015.6.4.	철제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35-04-49.0151	127-48-50.6233	224.305		176339.340	274233.150				지역
도근점	5003	양보면 감당리 산47-1	35-05-06.8029	127-49-06.5558	181.703	중 부	276856.098	274641.563	2015.6.4.	철제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35-04-55.6927	127-49-03.8920	153.960		176547.850	274567.570				지역
도근점	5004	양보면 감당리 1129	35-05-03.9107	127-49-04.1228	170.861	중 부	276766.459	274580.661	2015.6.4.	철제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35-04-52.8002	127-49-01.4587	143.120		176458.220	274506.660				지역
도근점	5005	양보면 감당리 1151-4	35-04-58.1438	127-49-12.6837	140.215	중 부	276590.514	274798.994	2015.6.4.	철제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35-04-47.0326	127-49-10.0204	112.468		176282.260	274724.990				지역
도근점	5006	양보면 감당리 1062-2	35-04-53.6538	127-49-14.9425	144.340	중 부	276452.612	274857.356	2015.6.4.	철제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35-04-42.5422	127-49-12.2793	116.590		176144.360	274783.350				지역

기준점 명칭	기준점 번호	토지소재	지적위성좌표/지적좌표			원점	평면좌표		설치일자	표지 재질	측량성과 보관장소	비고
			위 도	경 도	표 고		X	Y				
도근점	5007	양보면 감당리 1039	35-04-56.5052	127-49-20.7310	129.690	중 부	276541.695	275003.274	2015.6.4.	철제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35-04-45.3938	127-49-18.0684	101.936		176233.440	274929.270				지역
도근점	5008	양보면 감당리 1058	35-04-53.7644	127-49-19.0248	135.607	중 부	276456.873	274960.745	2015.6.4.	철제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35-04-42.6528	127-49-16.3619	107.855		176148.610	274886.740				지역
도근점	5009	양보면 감당리 1046-2	35-04-49.4749	127-49-17.8621	131.948	중 부	276324.436	274932.379	2015.6.4.	철제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35-04-38.3628	127-49-15.1991	104.195		176016.180	274858.370				지역
도근점	5010	양보면 감당리 1040	35-04-48.5687	127-49-26.6922	122.203	중 부	276298.355	275156.312	2015.6.4.	철제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35-04-37.4565	127-49-24.0300	94.445		175990.090	275082.300				지역
도근점	5011	진교면 술상리 125	34-59-42.4272	127-54-12.3549	56.170	중 부	266926.290	282478.722	2015.6.4.	철제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34-59-31.2796	127-54-09.7157	28.236		166617.820	282404.400				지역
도근점	5012	진교면 술상리 125	34-59-42.9529	127-54-18.9284	51.614	중 부	266943.999	282645.283	2015.6.4.	철제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34-59-31.8053	127-54-16.2898	23.676		166635.520	282570.960				지역
도근점	5013	진교면 술상리 401-10	34-59-39.1529	127-54-23.4670	48.923	중 부	266827.934	282761.447	2015.6.4.	옥상 배수구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34-59-28.0048	127-54-20.8288	20.981		166519.450	282687.130				지역
도근점	5014	진교면 술상리 416	34-59-36.5383	127-54-23.5296	47.616	중 부	266747.373	282763.764	2015.6.4.	옥상 각인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34-59-25.3900	127-54-20.8913	19.673		166438.890	282689.440				지역
도근점	5015	진교면 술상리 283	34-59-34.6954	127-54-29.8532	41.597	중 부	266692.033	282924.653	2015.6.4.	철제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34-59-23.5468	127-54-27.2155	13.651		166383.550	282850.330				지역
도근점	5016	진교면 술상리 297	34-59-29.4250	127-54-24.4887	40.869	중 부	266528.375	282790.080	2015.6.4.	철제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34-59-18.2759	127-54-21.8505	12.925		166219.890	282715.750				지역
도근점	5017	진교면 술상리 309	34-59-32.8633	127-54-16.8771	48.045	중 부	266632.586	282596.078	2015.6.4.	철제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34-59-21.7146	127-54-14.2383	20.107		166324.110	282521.750				지역
도근점	5018	진교면 술상리 693	34-59-29.5195	127-54-12.0743	54.107	중 부	266528.435	282475.203	2015.6.4.	철제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34-59-18.3704	127-54-09.4350	26.171		166219.960	282400.870				지역

하동군 공고 제2015-53호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고시

제236회 하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6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일

하 동 군 수

가. 결산총괄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계잉여금	비고
합 계	**434,596,665,800**	**440,033,692,047**	**354,667,581,169**	**85,366,110,878**	
일반회계	407,459,210,870	412,074,126,880	335,383,477,165	76,690,649,715	
특별회계	27,137,454,930	27,959,565,167	19,284,104,004	8,675,461,163	

1. 세입결산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비고
합 계	**434,596,665,800**	**442,526,758,424**	**440,033,692,047**	**2,493,066,377**	**666,135,500**	
일반회계	407,459,210,870	414,562,940,473	412,074,126,880	2,488,813,593	666,135,500	
특별회계	27,137,454,930	27,963,817,951	27,959,565,167	4,252,784	0	

2. 세출결산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합 계	**434,596,665,800**	**354,667,581,169**	**51,841,347,962**	**28,087,736,669**	
일반회계	407,459,210,870	335,383,477,165	48,600,396,452	23,475,337,253	
특별회계	27,137,454,930	19,284,104,004	3,240,951,510	4,612,399,416	

3. 세계잉여금

(단위 : 원)

회 계 별	합 계	이월사업비			보 조 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합 계	**85,366,110,878**	**36,916,671,480**	**14,924,676,482**	**0**	**3,145,842,781**	**30,378,920,135**
일반회계	76,690,649,715	34,438,901,280	14,161,495,172	0	3,047,889,998	25,042,363,265
특별회계	8,675,461,163	2,477,770,200	763,181,310	0	97,952,783	5,336,556,870

나. 일반회계 결산

1. 세 입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결손처분	이월액
합 계	**407,459,210,870**	**414,562,940,473**	**412,074,126,880**	**2,488,813,593**	**666,135,500**	**1,822,678,093**
지 방 세	13,503,000,000	14,988,017,630	14,015,512,730	972,504,900	323,124,870	649,380,030
지 방 세	13,503,000,000	14,988,017,630	14,015,512,730	972,504,900	323,124,870	649,380,030
세 외 수 입	12,371,861,000	17,552,080,303	16,035,771,610	1,516,308,693	343,010,630	1,173,298,063
경상적수입	5,840,949,000	5,377,715,546	5,343,662,903	34,052,643	0	34,052,643
임시적수입	6,530,912,000	12,174,364,757	10,692,108,707	1,482,256,050	343,010,630	1,139,245,420
지방교부세	169,936,712,000	168,505,322,000	168,505,322,000	0	0	0
조정교부금및 재정보전금 (재정보전금)	13,000,000,000	12,883,782,700	12,883,782,700	0	0	0
보 조 금	121,617,586,000	124,007,580,400	124,007,580,400	0	0	0
국고보조금	91,301,568,000	92,890,529,000	92,890,529,000	0	0	0
도비보조금	30,316,018,000	31,117,051,400	31,117,051,400	0	0	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77,030,051,870	76,626,157,440	76,626,157,440	0	0	0

2. 세 출

(단위 : 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합 계	**351,177,381,000**	**407,459,210,870**	**335,383,477,165**	**48,600,396,452**	**23,475,337,253**
일반공공행정	17,977,853,000	18,123,338,000	16,378,302,432	0	1,745,035,568
공공질서및안전	6,589,963,000	6,758,531,000	5,918,189,370	367,824,000	472,517,630
교 육	4,039,345,000	4,039,345,000	3,810,994,020	0	228,350,980
문화및관광	32,193,139,000	43,957,588,200	26,764,782,716	15,735,246,800	1,457,558,684
환경보호	15,290,611,000	15,915,553,740	13,481,463,870	1,902,247,000	531,842,870
사회복지	62,285,782,000	64,689,241,880	60,907,426,519	620,000,000	3,161,815,361
보 건	6,656,481,000	6,892,565,250	6,208,570,731	0	683,994,519
농림해양수산	81,967,957,000	93,106,695,240	75,256,649,191	11,805,626,350	6,044,419,699
산업중소기업	36,166,067,000	47,587,390,560	41,498,536,044	5,704,039,550	384,814,966
수송및교통	13,726,588,000	23,612,639,430	16,604,388,380	5,586,563,070	1,421,687,980
국토및지역개발	24,667,098,000	34,003,010,570	25,385,448,077	6,878,849,682	1,738,712,811
예 비 비	4,783,269,000	3,940,084,000	0	0	3,940,084,000
기 타	44,833,228,000	44,883,228,000	43,168,725,815	0	1,664,502,185

다. 특별회계 결산

1. 세 입

(단위 : 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수납액	미수납액처리	
					결손액	다음년도 이월액
합 계	**27,137,454,930**	**27,963,817,951**	**27,959,565,167**	**4,252,784**	**0**	**4,252,784**
상수도사업	7,410,728,930	7,799,258,940	7,799,258,940	0	0	0
의료보호기금조성	789,729,000	785,957,040	785,957,450	0	0	0
저소득주민생활	408,953,000	423,868,619	419,615,835	4,252,784	0	4,252,784
주민소득지원자금	700,000,000	809,724,190	809,724,190	0	0	0
농공지구조성사업	172,315,000	172,686,299	172,686,299	0	0	0
발전소주변지역	5,541,429,000	5,682,574,220	5,682,574,220	0	0	0
중소기업육성기금	3,318,150,000	3,307,614,639	3,307,614,639	0	0	0
농업재해복구자금	1,186,714,000	1,219,128,568	1,219,128,568	0	0	0
수질개선기금사업	7,609,886,000	7,763,005,026	7,763,005,026	0	0	0

2. 세 출

(단위 : 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합 계	**27,137,454,930**	**19,284,104,004**	**3,240,951,510**	**4,612,399,416**
상수도사업	7,410,728,930	5,593,686,010	1,400,127,900	416,915,020
의료보호기금조성	789,279,000	745,342,830	0	43,936,170
저소득주민생활	408,953,000	20,000,000	0	388,953,000
주민소득지원자금	700,000,000	56,934,500	0	643,065,500
농공지구조성사업	172,315,000	96,350,330	0	75,964,670
발전소주변지역	5,541,429,000	4,084,670,580	0	1,456,758,420
중소기업육성기금	3,318,150,000	3,228,640,531	0	89,509,469
농업재해복구자금	1,186,714,000	3,638,323	0	1,183,075,677
수질개선기금사업	7,609,886,000	5,454,840,900	1,840,823,610	314,221,490

라. 기타 결산

1. 기금 운영사항

(단위 : 원)

종 류 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계	조 성 액	지 출 액	
합 계	**12,646,241,244**	**448,655,570**	**1,268,458,800**	**819,803,230**	**13,094,896,814**
사회복지통합기금	9,492,493,468	386,660,800	495,060,800	108,400,000	9,879,154,268
식품진흥기금	5,136,620	1,512,680	5,312,680	3,800,000	6,649,300
재난관리기금	461,607,740	△14,654,110	692,949,120	707,603,230	446,953,630
농가경영회생기금	2,681,455,236	75,080,740	75,080,740	0	2,756,535,976
옥외광고정비기금	5,548,180	55,460	55,460	0	5,603,640

2. 채권 증감사항

(단위 : 원)

회 계 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발 생 액	상환소멸액	
합 계	**5,804,892,156**	**368,060,050**	**379,405,482**	**5,793,546,724**
일반회계	2,310,283,200	0	0	2,310,283,200
특별회계	3,494,608,956	368,060,050	379,405,482	3,483,263,524

3. 채무 증감사항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조 정 액	당해연도 현 재 액
합 계	0	0	0	0

4. 보증채무 증감사항

(단위 : 원)

회 계 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계	발생액	소멸액	
합 계	**36,500,000,000**	**△36,500,000,000**	**0**	**36,500,000,000**	**0**
일반회계	36,500,000,000	△36,500,000,000	0	36,500,000,000	0

5.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단위 : 원)

용 도 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증	감	
합 계	**1,300,297,436,444**	**16,871,451,606**	**2,004,662,874**	**1,315,164,225,176**
행정재산	1,280,913,623,335	16,520,837,739	504,428,781	1,296,930,032,293
일반재산	19,383,813,109	350,613,867	1,500,234,093	18,234,192,883

6. 물품증감 및 현재액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수량	금액	취 득		처 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계	**523**	**4,938,065,000**	**62**	**754,296,470**	**33**	**235,329,000**	**552**	**5,457,032,470**
업무용	523	4,938,065,000	62	754,296,470	33	235,329,000	552	5,457,032,470

7. 세입세출외 현금결산

(단위 : 원)

종 류 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계	증가액	지출액	
합 계	**1,800,780,971**	**720,856,746**	**12,257,784,419**	**11,536,927,673**	**2,521,637,717**
보 증 금	415,779,429	349,626,410	628,549,210	278,922,800	765,405,839
보 관 금	1,167,133,749	219,761,298	10,593,126,005	10,373,364,707	1,386,895,047
잡종금등기타	217,867,793	151,469,038	1,036,109,204	884,640,166	369,336,831

하동군 공고 제2015-669호

하동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3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2. 제안 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에 해당 사업의 지출 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 할 수 있어, 수단체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인용조문수정(개정안 제2조)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 가능한 사업을 구체 적으로 규정 (개정안 제11조)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5년 8월 13일까지 하동군(참조 : 행정과, 전화880-2154, FAX 880-2159, soullake@korea.kr)에게 **【별지 서식】** 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1. 하동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
2. 신구조문대비표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아동복지법」 제2조”를 “「아동복지법」 제3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위원회에서 정한 사업에”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준법교육과 법질서 캠페인 등 법질서 준수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
2. 범죄취약 지역에 대한 방범 순찰활동
3. 청소년 범죄예방 및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한 사업
4. 아동, 여성, 다문화가정 등 범죄 취약계층 보호 및 범죄예방을 위한 사업
5.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활동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역사회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2조에 따라 18세 미만으로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 1. ----------「아동복지법」 제3조---------.
제11조(보조금 등 지원) ①군수는 군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한 단체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과 다문화 가정,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위원회에서 정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보조금 등 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준법교육과 법질서 캠페인 등 법질서 준수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 2. 범죄취약 지역에 대한 방범 순찰 활동 3. 청소년 범죄예방 및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한 사업 4. 아동, 여성, 다문화가정 등 범죄 취약 계층 보호 및 범죄예방을 위한 사업 5.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활동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역사회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②(생 략) <신 설>	②(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3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하동군 제2015-673호

2013.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하였기에 이를 결정·공시합니다.

1. 가 격 기 준 일 : 2013. 1. 1.
2. 정정지가 결정·공시일 : 2015. 7. 28.
3. 정정지가 결정·공시 필지수 : 2필지

(단위:원/㎡)

순번	토 지 소 재	당시지목	결정지가	정정지가	비 고
1	적량 서리 1302-2	대	10,500	9,970	토지특성정정 (접면)
2	적량 서리 1316	임	350	1,570	토지특성정정 (토지용도 및 접면)

4. 행정사항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사항

하동군 홈페이지에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사항은 민원과 부동산관리담당부서(☎055-880-21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년 7 월 28 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공고 제2015-674호

하동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8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2. 제안 이유 : 행정의 최일선에서 마을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이를 전달하고, 마을 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를 조장하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2004년 이후 이장 수당이 인상되지 않아 이장들의 노고가 제대로 보상되지 못하고 있어 활동비를 신설하여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활동비지원근거 신설(개정안 제4조제3항)
   - 활동비 지급범위 등 신설(개정안 제4조의2)

4. 의견 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5년 8월 13일까지 하동군(참조 : 행정과, 전화880-2155, FAX 880-2159, dragonjow@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1. 하동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
2. 신구조문대비표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현장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현장활동비의 지급 등) ① 제4조제3항에 따른 현장활동비는 월정수당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 이하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실비변상) ①·② (생 략) <신 설>	**제4조(실비변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현장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4조의2(현장활동비의 지급 등)** ① 제4조제3항에 따른 현장활동비는 월정수당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 이하로 한다.

하동군 공고 제2015-675호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정 공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20조 규정에 따라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제출된 지번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조정 공고합니다.

1. 가 격 기 준 일 : 2015. 1. 1.
2. 정정지가 결정·공시일 : 2015. 7. 31.
3. 정정지가 결정·공시 필지수 : 16필지

(단위 : 원/㎡)

연번	토 지 소 재 지	지 목	당초결정지가	정정지가	비 고
1	고전면 전도리 671-5	잡종지	13,300	**15,100**	
2	고전면 전도리 993	대	36,600	**42,700**	
3	옥종면 두양리 43-1	대	23,000	**33,800**	
4	옥종면 두양리 43-3	답	15,500	**16,100**	
5	옥종면 두양리 44-1	대	23,000	**33,800**	
6	옥종면 두양리 42	대	19,400	**22,600**	
7	옥종면 두양리 43	차	17,500	**21,400**	
8	옥종면 두양리 44	차	17,500	**21,400**	
9	옥종면 두양리 44-3	전	9,780	**11,900**	
10	옥종면 두양리 43-4	대	19,400	**22,600**	
11	옥종면 두양리 44-5	대	19,400	**22,600**	
12	북천면 직전리 820-2	대	22,000	**34,100**	
13	청암면 묵계리 1155-3	대	50,200	**26,900**	
14	청암면 묵계리 1155-5	대	50,200	**26,900**	
15	청암면 묵계리 1155-6	대	50,200	**26,900**	
16	청암면 묵계리 1553-1	대	64,600	**76,600**	

4. 행정사항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사항

하동군 홈페이지에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사항은 민원과 부동산관리 담당부서(☎055-880-21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년 7 월 31 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공고 제2015-678호

하동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0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2. 제안 이유 : 상위법 재·개정 사항 미반영 등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정비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 중복 사항 조문 삭제 : 조례제9조제7호, 제13조제1항제3호 삭제

○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 규정 신설(안 제12조의 2)

○ 상위법령에서 첨부하도록 규정한 서류 외 첨부서류 삭제

- 제13조제1항제2호 삭제(상생협력사업계획서)

○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사항 상위법령과 일치 (안 제13조제1항))

○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및 조건 부과를 할 수 있는 위치와 변경등록의 범위 한정(안 제14조제1항)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5년 8월 19일까지 하동군(경제수산과, 전화 880-2194, FAX 880-2199)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하동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별지서식 포함)

2. 신구조문대비표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3장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겨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 된 경우
2. 시장정비사업, 개발사업, 상권변경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제4장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신청서 및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제1항 중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때”를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 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는 경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제9조(협의회의 기능) ----------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삭 제>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2(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겨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시장정비사업, 개발사업, 상권변경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제13조(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 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2. 상생협력사업계획서(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계획서를 말한다) 3.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제13조(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①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신청서 및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조건 등의 부과) ①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는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제14조(조건 등의 부과) ①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 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는 경우 --.
②(생 략)	②(현행과 같음)

하동군 공고 제2015-681호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하수도 사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년 7 월 31 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2. 제안 이유 : 상위법 제·개정 사항 미반영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여 공중위생의 향상과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 기준)중 “법 제15조 및 규칙7조의 규정”을 “법 제15조”로 개정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삭제
   -제30조(이의 신청) 제2항 중 “규정을 준용한다”를 “규정에 따른다로 개정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5년 8월 19 일까지 하동군(상하수도사업소, 전화880-2604, FAX 880-2599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
2. 신구조문대비표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조례(규칙) 제 호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15조 및 규칙 제7조의 규정”을 “제15조”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30조제2항 중 “제73조 및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의 규정에 따른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법 제15조 및 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 제15조 ----------.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따라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 구분과 달라졌을 때	<삭 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신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하동군 수도급수 조례」의 규정에 따른 급수 사용개시 신고 2.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 3.「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	
제30조(이의신청) ① (생 략)	제30조(이의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제73조 및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 ---------- ----의 규정에 따른다.

하동군 공고 제2015-682호

하동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년 7 월 31 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안 이유 : 상위법 제·개정 사항 미반영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여 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제5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건축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1항 본문 중 “연면적”을 “건축물 중 연면적”으로 한다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5년 8월 19 일까지 하동군(상하수도사업소, 전화 880-2604, FAX 880-2599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하동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2. 신구조문대비표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조례(규칙) 제 호

하동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건축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연면적”을 “건축물 중 연면적”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① 군수는「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 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건축물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건축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6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군수는「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를 제외한다.	제6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건축물 중 연면적 ----------.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